

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(고용조정지 지원) 및 제35조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) 및 제106조(준용)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 1. 1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1조(고용조정지 지원)·제35조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)·제106조(준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2. 1. 19. ~ 2022. 2. 3.(15일)

5.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홍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(032-460-4691)
 [붙임 1]

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2. 1. 19. ~ 2022. 2. 3.(15일))

연 번	성명	사업자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부당이득 해당월	환수 금액	환수 사유		
1	(주)하○○ 이	121-86-29○ ○○-0	고용유지지원금(‘20.5 월분)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및 의견제 출 안내	2020. 5월	1,800,000원	감원방지의무 위반 (감원 대상자: 고○은)	폐문부재	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84, 신공항파크빌 201호
2	차○풍	791-74-00○ ○○-0	고 용 유 지 지 원 금 (‘20.5~6월분) 부당이 득 환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2020. 5~6월	3,330,000원	감원방지의무 위반 (감원대상자: 김○주)	폐문부재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6 , 1층